

[일련번호 : 71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동행파트너 활동수당 지급근거 미흡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「지방회계법」 및 ‘2024년 침수재해약자를 위한 공무원 돌봄서비스 구성 및 운영 계획’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침수취약가구에 출동하여 대피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 동행파트너에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 ‘2024년 침수재해약자를 위한 공무원 돌봄서비스 구성 및 운영 계획(○○과-3328, 2024.3.5.)’에 따르면 동행파트너는 침수 우려 시 재해취약가구에 상황전파 및 신속 대피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며, 통·반장 및 인근 주민으로 매칭하여 침수예보 시 대상가구 출동에 참여한 동행파트너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과는 2024. 11. 20. ‘침수 재해약자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 활동수당 지급’으로 현장 활동에 참여한 동행파트너 5명에게 회당 46,000원을 기준으로 총

230,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. 지급공문에 첨부된 지급내역서에는 동행파트너 이름, 계좌번호 및 지급금액이 작성되어 있었으며, 증빙자료로 활동사진 4장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진만으로는 활동자 식별이 곤란하고 출동일시 및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. 또한 추가로 제출한 재해취약가구 관리카드의 경우 출동 횟수와 수당지급 횟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출동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자료로는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파트너 활동 수당 지급 시 객관적 증빙자료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